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2회 임시회
’21. 7. 14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숙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사유

○ 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· 정신적 · 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아동등” 및 “실종아동등” 용어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
○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교육 · 홍보 사업 실시(안 제4조)

○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사업(안 제5조)

○ 지자체, 경찰 및 관련 기관 ·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· 운영(안 제7조)

○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공적자 포상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회)

○ 제출배경

- 매년 아동, 장애인 등의 실종 발생에 따라 가정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됨에 따라 아동등의 실종 예방과 실종아동 복귀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아동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「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05년 12월 제정·시행됨.
- 실종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고, 실종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조기 발견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,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음.

○ 주요내용 검토

가. 안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정의)

- 도내에서 발생하는 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(지적, 자폐, 정신) 등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·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 이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안에서 정의는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아동등” 및 “실종아동등”에 대해 정의하여,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.

>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> 1. “아동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> 가.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
> 나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
> 다.「치매관리법」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
> 2. “실종아동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등을 말한다.

나. 안 제4조(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)

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에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,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 주간으로 정하고 있음.
- 또한, 이날 및 주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적합한 행사 ·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는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 · 방법 및 발생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안 제4조에서는 충북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다. 안 제5조(지원 사업) 및 제6조(예산 지원)

- 실종아동등 지원업무는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으며,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 의해 주관되며,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 · 조정함.
- 또한 신고체계 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는 시 · 군이 담당하고 있어, 광역도의 업무는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행이 요구됨.
- 이에 도는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관련 기관 · 단체 및 도민 대상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, 교육, 홍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(이를 수행하는 기관 · 단체 등에 필요 비용 지원)하고,
- 소방본부 등에서 운용 중인 무인항공기(드론) 등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및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(위치 추적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)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라.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및 제8조(포상)

-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도내 시·군을 포함한 주변 지방자치단체, 경찰청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.
- 또한, 포상규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선행을 기리고 도민의 관심 제고하기 위함.

마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인 실종아동, 치매환자, 장애인 등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규정하고
- 또한 실종 발생을 사전예방하며, 실종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조기 발견하여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·정신적·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, 실종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우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매우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입법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